



## 커피 공급회사 고객정보를 무단취득하여 수행한 영업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09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고등법원	사건번호	平成11년(제) 제5064호
판결 일자	2000. 4. 27.	판결 결과	항소기각 (원고 승)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히아 시스템7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이스트, 2. A, 3. B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	고객정보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체험적 고객정보		

### 02 사건 개요

원고는 고객의 사무소 등에 커피 서버를 설치 및 유지·관리하며, 당해 커피 서버용 커피 분말, 설탕 및 밀크 등을 공급 판매하는 업무("OCS 사업")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회사는 식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커피콩 등의 판매를 수행하는 한편 OCS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원고의 이사였다가 피고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이며,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다가 피고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감사에 취임한 후 피고회사의 고문으로서 동사의 업무수행을 지도한 자이다.

피고 A, B는 원고 재직중 OCS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피고회사의 설립준비를 시작하여 이를 설립하였고, 소외 D, E, F, G를 원고로부터 퇴사시키고 피고회사에 입사시켰으며, 이들에게 지시하여 원고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의 커피 서버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고객정보를 이용한 고객권유의 금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만환청구로서 본건 커피 서버의 부속품의 사용 금지를 청구하였다.

원 고 (피항소인)	⇔	피 고 (항소인)
<p>원고의 고객정보는 피고 A의 개인적 인맥과 소외 D, E, F, G의 영업활동이 중심이 되어 획득된 정보가 아니며,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p> <p>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적 인맥이나 영업활동에 의한 고객의 개척도 원고의 업무로서 축적, 관리 및 제시된 고객정보로써, 위 고객정보는 원고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는 것이다.</p> <p>침해당한 측의 매출이 감소하고 그만큼 침해자의 매출이 증가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까지 순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면, 원래 이익이 적은 기업, 손실을 내고 있던 기업은 아무리 침해를 당해도 손해는 극히 적거나 전혀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바, 본건의 경우 손해(일실이익)는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p>	⇔	<p>원고의 고객정보는 피고 A의 인맥과 소외 D, E, F, G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획득된 체험적 고객정보로서, 이는 다른 정보와 명확하게 구별하여 관리할 수 없으므로 비밀 관리성이 없고, 유용성 및 비공지성도 결여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p> <p>위 체험적 고객정보는 동 정보의 근원이었던 피고 A의 인맥과 소외 D, E, F, G의 영업활동을 통해 동인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보유한 정보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제시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p> <p>원판결은 원고로부터 피고회사로 전환한 고객 중 원고로 다시 전환되지 않는 고객(“이스트 잔류 고객”)에 대한 원고의 매출 총이익을 손해액으로 하였으나, 이는 (i) 원고의 고객을 피고회사의 고객으로 전환한 것이 모두 불법이라 전제하는 것이므로 부당하고, (ii) 고객정보는 시간에 따라 권리성이 희박해지므로, 그에 따른 손해액은 두 달 간의 일실이익에 그쳐야 하며, (iii) 일실이익은 피해자(원고)의 매출 총이익이 아니라 판매비 등을 공제한 일실 영업이익(순이익)으로 하여야 한다.</p>

## 04 판결 요지

---

본 판결에서 설명하는 "업무를 통해 직원들이 경험으로 알게 된 고객 정보"는 고객이 누구인가 하는 정보이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체험적 고객정보)은 아니다.

---

고객명단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보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그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원고의 고객명단은 비밀 관리성, 유용성 및 비공지성이 충족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피고회사로 전환된 고객 중에, 피고 A의 인맥과 소외 D, E, F, G가 개척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환이 상기의 자들이 피고에 제시되지 않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기억하고 있던 것만을 사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피고회사가 제공하는 커피 원두나 서비스 등의 조건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피고회사의 고객이 된 자도 존재하는 것을 추인할 수 있으나, 이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건 고객정보가 불과 한두 달로 이용가치가 없게 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

## 05 Key Point

---

회사의 종업원들의 인맥과 영업활동에 의하여 획득된 고객정보라고 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당해 회사에서 제시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방식이 제시된 사례이다.

---